

서울고등법원 2022. 6. 24 선고 2022나2008281(본소), 2022나2008298(반소) 판결 [건물철거
및 토지인도 등 · 철도용도폐지등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6. 24 선고 2022나2008281(본소), 2022나2008298(반소) 판결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2. 16 선고 2019가합30945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대한민국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결

담당변호사 곽소현

피고, 항소인1.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 G

2. 망 F의 소송수계인 H

3. I

4. 피고 겸 망 F의 소송수계인 J

5. K

피고들 및 피고(반소원고)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원

담당변호사 박은혜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망 F의 소송수계인 L

피고들 및 피고(반소원고)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원

담당변호사 박은혜

변론 종결2022. 5. 27.

판결 선고2022. 6. 24.

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19가합30945(본소), 2019가합30952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피고들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들과 피고(반소원고)가,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,

- 1) 피고 G, I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,
- 2) 피고 G, H, J, K 및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고,
- 3)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반소

- 1) 주위적으로, 원고는 피고 L에게 서울 용산구 M 철도용지 4421.7㎡ 중 별지4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2,321.7㎡에 대하여 도시계획선(철도용도)을 일부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, 피고 L으로부터 122,967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L에게 서울 용산구 M 철도용지 4421.7㎡ 중 별지5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5.1㎡에 대하여 2012. 6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) 예비적으로, 원고는 피고 L에게 위 1)항 기재 선내 'ㄱ' 부분 2,321.7m²에 대하여 도시계획선(철도용도)을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, 명도청구를 취하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청구취지 제1의 나항과 같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충하여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제목 부분(제4쪽 아래에서 11째 줄) "피고들의"를 "피고들 등의"로 고쳐 쓰고, 같은 항 첫째 줄(제4쪽 아래에서 10째 줄) "피고들과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들은"을 "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A, B, C은"으로 고쳐 쓰며, 이하 부분의 "피고 A", "피고 B", "피고 C" 부분을 모두 "제1심 공동피고 A", "제1심 공동피고 B", "제1심 공동피고 C"으로 지칭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1.나의 2)항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[인정근거] 첫째 줄(제5쪽 4째 줄) "9호증의 기재,"를 "9호증의 각 기재,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가항 9째 줄부터 마지막 줄(제5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마지막 줄) "따라서 원고에게 ~ 인도할 의무가 있다."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따라서 원고에게 즉시, 피고 G, I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, 피고 G, H, J, K, L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며,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를 인도할

의무가 있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을 삭제하고, 제2의 "다"항을 "나"항으로 고치며, 그 제목 부분(제6쪽 아래에서 9째 줄) 중 "나머지"를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2.다.1)의 가)항 첫째 줄(제6쪽 아래에서 6째 줄) "피고들의"를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2.다.1)의 라)항 2째 줄(제7쪽 6째 줄) "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"를 "주위적으로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2,321.7m²에 대하여"로 고쳐 쓴다. 또 같은 항 마지막 줄(제7쪽 10째 줄) "구한다." 다음에 "피고 L은 또한 예비적으로, 위 선내 'ㄱ' 부분 2,321.7m²에 대하여 철도용지를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, 명도청구를 취하할 것을 구한다."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2.다.2)의 가)항 9째 줄(제8쪽 2째 줄) "이 사건 토지를"을 "이 사건 각 건물을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2.다.2)의 가)항 마지막 줄과 나)항 첫째 줄 사이(제8쪽 12째 줄과 13째 줄 사이)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철도 용지로서의 행정 목적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,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하여 원고가 2016. 9. 13.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 L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2.다.2)의 나)항 3째 줄(제8쪽 아래에서 7째 줄) "'피고"를 "피고"로 고쳐 쓴다.

2. 보충판단

가. 항소이유의 요지

이 사건 토지가 2015. 5. 28.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. 7. 9.경

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고,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에 관해서도 기숙사 신축부지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, 교부되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용도폐지가

되었다. 그리고 소음진동 발생을 원인으로 한 실시계획 변동인가에 오류가 존재하는 등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수용재결에는 정당성이 없다. 제1심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였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.

나. 판단

제1심판결문 이유 제2.다.2)의 가)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갑 제10 내지 12, 20, 2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피고 L 등이 N 복선전철 건설사업(○ 구간) 실시계획(변경) 승인의 효력을 다투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(중앙행정심판위원회 Q N복선전철 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,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2249 실시계획 변경승인무효확인, 서울고등법원 2018누51364, 대법원 2019두60486), 위 피고 등이 R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(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, 서울고등법원 2018누59481, 대법원 2019두36568), 위 소송 등에서 소음·진동 측정에 오류가 있어 위 실시계획 변경고시 등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.

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L의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명도청구의 취하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, 반소청구의 예비적 청구 중 명도청구의 취하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L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지영난

판사장준아

판사이재혁

별지